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309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30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나28475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AB 담당변호사 전BA외 1인)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나284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대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한EA기계(이하

한EA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ODBER HOIST 2대의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대출을 함에 있어 한EA기계로부터 그 ODBER HOIST의 설치를 완료하였다면서 그 기성고확인을 요청받고 원고 은행 FA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인 소외 윤DA가 한EA기계의 공장을 방문하여 한EA기계로부터 소외 ODBER HOIST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유시설현황, 보유설비 및 투자계획배치도, 위 정GB의 견적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는 등의 방법으로 위 ODBER HOIST의 신규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 윤DA가 확인한 위 ODBER HOIST 전동호이스트 부분에는 "제작처 (주)현GA스트, 제조일 1995. 8."이라고 기재된 알루미늄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데 비하여, 프레임 부분에는 그러한 명판이 없고 그 대신에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의 페인트로 "KK공업Co. 제한하중 : 5TON, 제조일 1998. 6."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제작처 등의 표시방법과 내용이 서로 달랐고 그로 인하여 위 윤DA는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는 아니한 채, 위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에 따른 신규 호이스트가 설치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1998. 8. 24. 원고 은행 FA지점에 기성확인보고를 한 사실, 한편, 위 한EA기계가 위 윤DA에게 제시한 서류 중 위 정GB의 사업자등록증(갑 제14호증의 2)에는 그 사업체의 상호가 "KK공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EA기계와의 위 HOIST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3) 및 사용인감계(갑 제14호증의 3) 등에는 "KL공업"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마치 원심이「위 윤DA가 전동호이스트 부분에 "제작처 (주) 현GA스트, 제조일 1995. 8"이라고 기재된 알루미늄 명판이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1. 기초사실, 라항에서 위 원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실시하였을 뿐 윤DA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명판이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실시한 바 없을뿐더러 원심판결 이유 3. 판단 다항에서「원고 은행의 직원인 위 윤DA가 기성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시에 육안으로 확인한 HOIST는 그 프레임 부분과 전동호이스트 부분의 제작자 및 제작년도의 표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전동호이스트 부분에는 (주)현GA스트가 1995년 8월경에 제작한 것이라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이라고만 실시되어 있을 뿐이며 위

운DA가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그 증언내용 중 다른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곧 위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그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주담보로 취득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우선해지하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취득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정당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한다고 함은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그 작성·발급자 등에게 조회·확인함으로써 정당한 기성고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당한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출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KM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은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된 사항과 신용보증약관의 담보권이전 및 면책약관의 취지는,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질 대출이 한EA기계의 신규시설 설치자금용으로 대출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이미 제3자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대출기관인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으로 설치되는 신규시설을 포함한 위 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3순위의 공장저당권을 설정받되, 위 신규시설을 새로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으로 등기함으로써 그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제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을 이전받아 피고의 구상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을 행하는 원고 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대출금으로 설치되는 신규시설에 관하여 제1순위의 담보권(공장저당권)을 취득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서 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한EA기계의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은행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으로 등기하였던 HOIST 2대가 소재불명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 은행은 그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로 되는데 위와 같은 결과는, 한EA기계의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기계기구목록 제4003호에 포함되어 있던 1995년도에 제작된 국산 HOIST 2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원고 은행이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삼은 기계기구목록 제1228호에 기재된 HOIST 2대는 소재불명으로 밝혀졌는데 앞서 본 HOIST에 대한 기성확인시와 이 사건 대출과 경매절차 개시와의 간격이 6개월의 단기인데도 HOIST 2대가 소재불명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EA기계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신규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HOIST 2대를 실제로는 신규설치한 바가 없고, 다만 이미 1995년 8월경에 설치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HA은행의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던 HOIST 2대를 마치 이 사건 대출금으로 1998년 8월경에 신규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윤DA의 기성확인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원고 은행이 위 신규설비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1)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의 직원인 위 윤DA가 한EA기계의 공장을 현장확인할 당시에, 한EA기계가 신규설치하였다는 HOIST 중 전동호이스트 부분과 프레임 부분의 제작자 및 제작년도에 관한 표시가 서로 달랐고, 특히 전동호이스트 부분에는 한EA기계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KK공업이 아니라 (주)현GA스트가 1995년 8월경에 제작한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므로 위 윤DA로서는 한EA기계가 제시한 HOIST가 그 당시에 신규설치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2) 한EA기계가 신규설치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여러 서류 중에는 제작, 납품업자의 상호가 KK공업이 아닌 'KL공업'이라고 표시된 것도 있었으므로 이것 역시 그 매매계약서 등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 중의 하나이었고 (3) 위 윤DA는 기성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시에 위 HOIST의 제작자 및 제작년도 등의 표시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으면서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4)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발행하여 원고 은행에게 교부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한EA기계의 공장 및 신규 설치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제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 공장에 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근저당권은 위 특약의 내용에 비추어 기계기구목록이 포함된 공장저당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적어도 한EA기계와의 사이에서 1998. 8.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 저당권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 확인하여 보기만 하였더라도 쉽사리 1995. 12. 29.자로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주)HA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공장저당이고 그 기계기구목록으로 제4003호가 등기되어 있으며 그 기계기구목록 중에는 위 한EA기계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신규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과 규격면에서 거의 유사한 HOIST 2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한EA기계가 위 윤DA에게 제시한 HOIST 2대가 신규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95년 8월경에 설치되어 위 기계기구목록 제4003호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도 원고 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담보취득특약 및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시설자금을 대출하기에 앞서 한EA기계가 그 대출금으로 신규설치하는 HOIST에 관하여 담보권(근저당권)을 취득함에 있어 취선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러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위 신용보증서의 약관에 규정된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